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모경종ㆍ이원택ㆍ최민희

서미화 • 윤건영 • 박희승

강훈식 · 홍기원 · 김한규

김남근 · 김문수 · 박민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입액이 단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기준재 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보 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 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분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충원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나, 기존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도록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법률 제 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 ②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	3
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	
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	
정(補正)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분리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
	도와 다음 연속하는 2개 회
	계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용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